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68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민형배 • 박민규

이성윤 • 이춘석 • 박희승

허종식 · 서영교 · 서삼석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이 발표한 '2023 인구동향조사'에 따르면, 2023년 합계출산율은 0.72명을 기록했으며,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.

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·평가하 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,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도록 '인구변화인지 예·결산제도'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 2 및 제68조의4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36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부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인구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변화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인구변화인지 예산서에는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인구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인구변화인지 예산서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3(인구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출생 등 인

구변화에 대응하고,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변화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인구변화인지 결산서에는 출생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집행실적, 인 구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 유지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.

제65조 본문 중 "제68조의3"을 "제68조의3, 제68조의4"로 한다.

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4(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인구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 유지 효과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

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,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4(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,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

는 보고서(이하 "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출생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집행실 적, 인구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 유지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변화인지 예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, 제34조제9호의3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4,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	
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	
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정부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
	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ㆍ
	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
	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
	노력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27조의2(인구변화인지 예산서
	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출
	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
	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
	구변화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
	작성하여야 한다.
	② 인구변화인지 예산서에는
	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
	및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
	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	③ 인구변화인지 예산서의 작
	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
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
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
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~ 9의2. (생 략)
<<u>신</u> 설>
10. ~ 16. (생 략)
<<u>신</u> 설>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, 제68조의2,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9의3. 인구변화인지 예산서
10. ~ 16. (현행과 같음)
제57조의3(인구변화인지 결산서
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출
생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, 국
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
구 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
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
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
(이하 "인구변화인지 결산서"라
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인구변화인지 결산서에는
출생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집행
실적, 인구구성의 균형과 적정
인구수준 유지 효과분석 및 평
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제68조의3,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,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저 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 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(이하 "기

제68조의3, 제68조의4
세68조의4(인구변화인지 기금운
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
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
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
(이하 "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
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
<u>한다.</u>
② 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
서에는 인구구성의 균형과 적
정 인구수준 유지 효과 및 성
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
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세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
부서류)

금운용계획안등"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6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(생 략) <신 설>

<u>.</u>

-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 6의3. 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 획서
- 7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4(인구변화인지 기금결 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 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 고,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 서(이하 "인구변화인지 기금결 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에 는 출생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집행실적, 인구구성의 균형과 적정 인구수준 유지 효과분석 <u>제73조의4</u>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생 략)

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 제73조의5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현행 제73조의4과 같 음)